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결정

사건 2018나3

피신고인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주문

1. 피신고인의 언행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의 인권침해 및 제2조 제2호 가목의 성희롱,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한다.

2.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대한 중징계(최소 정직 3월)을 요청한다.
단,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피신고인의 기타 비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징계를 고려해야 한다.
3. 피신고인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총 4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다.
 - 가. 피신고인은 재발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30시간 이상의 일대일 교육을 이수한 후 인권센터에 사과문과 소감문을 제출한다.
 - 나. 피신고인은 인권 존중적 태도와 관계 형성을 위하여 15시간 이상 인권 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이수확인증과 소감문을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4. 피신고인은 인권센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신고인 또는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자, 인권센터에 진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접촉·면담·대화 등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신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위배하거나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였을 때는 인권센터는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한다.

6. 서어서문학과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서어서문학과는 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과 교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나. 서어서문학과는 학부생·대학원생·강사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참석을 독려하고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다. 서어서문학과는 대학원 입학, 전공 선택, 지도교수 선정, 장학금 신청, 논문 투고·발표 등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대학원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변경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
- 라. 서어서문학과는 학과 내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성차별적 관행과 회식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 마. 서어서문학과는 특정 교수를 배제하는 일에 학과 교수들이 동조하거나 방관한 사실에 책임을 인정하고, 교수회의에서 학과장이 공식적으로 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 바. 서어서문학과 교수·강사 등은 이 사건에 진술했거나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력, 불편한 환경 조성, 배제와 따돌림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불이익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며, 학과장은 이에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 이를 어겼을 경우 인권센터는 행위자에 대해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한다.

7. 인문대학장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인문대 학장은 제6항 서어서문학과에 대한 인권센터의 권고가 성실하게 잘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고, 단과대학 차원에서 권고 이행에 필요한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
- 나. 인문대학 학장단은 대학원생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소속된 모든 학과를 모니터링하고, 단과대학 차원에서 대응 및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원생들이 문제제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해결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다. 인문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수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라. 인문대학 소속 각 학과에서 학부생·대학원생·강사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 마. 인문대학은 단과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를 단과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공표해야 한다.

이 유

1. 사건 조사와 심의의 개요

가. 사건 조사의 개요

이 사건은 2018. 7. 12. 최초 신고 되었으며, 당사자들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사건 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와 다른 진술자를 구분하지 않고 익명화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들에 대한 초기 진술을 받은 후 인권센터는 2018. 7. 20. 피신고인에게 1차 조사개시 통보를 했고, 피신고인이 확인하지 않아 7. 30. 2차 조사개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했다. 피신고인 대면 조사는 7. 31.과 10. 18. 두 차례 이루어졌으며, 8. 8.과 10. 22.에 진술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다. 피해 진술은 면담 조사, 이메일 문답 조사, 진술서 제출 등의 방식으로 2018. 7. 19.부터 12. 4.까지 총 17명으로부터 받았다.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및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18. 11. 5. 이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나. 심의의 개요

인권센터는 이 사건 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와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내 위원 4인과 전문성을 갖춘 학외 위원(변호사) 2인으로 총 6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심의위원회의 판단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6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사실 판단

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 통제

가) 당사자·참고인들의 피해사실 주장

당사자와 참고인들은 피신고인이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이나 비난, 요구와 지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과 생활을 압박, 통제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한다.

첫째, 피신고인은 학과 술자리에서 학생들이 일찍 집에 가거나 인사 없이 사라질 경우 다음날 새벽에 ‘유감이다, 예의가 아니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배은망덕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였다. 이에 관하여 일부 학생들은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불잡지 않았다. 간다고 인사를 하면 잘 보내주었다’고 전술하였고, 일부 학생들은 ‘술자리가 3차, 4차에 새벽까지 이어져서 너무 힘들었고, 술을 잘 마시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지 못하게 불잡하고, 불려 나가야 했다’, ‘일찍 간다고 하면 잘 보내주지

않아 몰래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예의가 없다는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셔서 더욱 빠지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학생들은 피신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일찍 간 것을 혼냈기 때문에 술자리를 강요받는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피신고인 뿐만 아니라 학과 전체가 술을 많이 마시는 문화로 유명하고, 학생들이 일찍 간다고 하면 불잡거나, 빠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억지로 끌고 가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신고인은 특정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청계산, 북한산 등으로 산행을 가자고 여러 차례 이메일과 구두로 제안했고, 한 번은 주말 아침에 '○○역 ○ 번 출구로 ○시까지 나오라'는 일방적인 문자를 보낸 후 학생이 가족모임을 이유로 거절하자 '예의가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등산을 강요하였다. 해당 학생은 피신고인에게 등산을 단 둘이 가자는 의미인지 물어보았고, 피신고인은 '북한산에 힘든 코스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력이 약해서 안 되고, 네가 체력이 좋다'고 대답하며 등산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한다. 또한 반복적인 산행 요구에 애둘러서 거절하다가, 단 둘이 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먼저 '그러면 전공생들이 다 함께 가자'고 피신고인에게 제안하였고, 전공생 3명과 피신고인이 함께 2015년 여름 청계산을 등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둘째,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논문지도에 대한 감사 인사와 성의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도교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학생과 면담을 할 때 선물을 사가지 않으면 "교수 연구실에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니다"고 야단을 맞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까지 선물을 챙겨야 했으며, 논문지도에 감사표시를 하라는 말은 음료 한 잔 정도만 챙겨도 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셋째,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같은 학과 모 교수님을 비하·비난하는 말과 함께 인사하지 말 것, 수업을 듣지 말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다. 피신고인이 2014-2016년에 학생들에게 최소 5차례 단체로 발송한 이메일에는 ‘□□□ 선생님은 논문 내용은 뭔지도 이해도 못하시면서 맨날 땀지를 거신다. … 학생들에게 여왕벌처럼 군림하려 하는 □□□ 선생님이 몹시 못마땅하다. 한마디로 학자가 아니다. … 내 앞에서 □□□ 선생님한테 아무하는 그런 언행은 하지 말기 바란다. 역겹다!’, ‘하여간 논문 data 때문에 □□□ 선생님으로부터 사소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나는 이런 지적 들을 때 제일 기분 나쁨) 사전에 data를 미리 검증받고 발표하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내가 □□□ 선생님의 학문세계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다. … 하여, 후배들에게 □□□ 선생님 대학원 수업은 권하지 말도록. … 내가 보기엔 시간 낭비다. 차라리 언어학과나 영문과 어학강좌를 수강하라고 후배들 수강지도를 해주거라.’, ‘한 번 빠치면, 눈길도 안준다고 한다. 박통처럼, 완전 공주병이다. … 연구하지 않는 교수는 자기 과시를 위해 더 힘쓴다는 점,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땐 참지 못하는 점, 그게 실력 없는 교수의 한계이다’, ‘내가 그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 터이니, 내 면전에서 □□□ 선생님한테 깍듯이 인사하고 아무하는 언행은 삼가 주기 바랍니다. 속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언행을 보면 기분이 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피신고인이 □□□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며, 지도교수로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른 대학원생들을 통해 ‘피신고인을 지도교수로 해야 졸업을 잘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거나 압력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학과에 들았다고 전술한다.

이에 학생들은 피신고인의 이메일을 받고 나서 ‘피신고인 앞에서는 눈치가

보여서 □□□ 교수님께 인사할 수 없었고, 인사할 때마다 피신고인이 보고 있음을 까봐 신경 쓰여 불편했고, 학생들에게 웃으면서 잘 해주려고 하시는 □□□ 교수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었다.' , '인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는 앞에서 인사 하는 것은 지도교수인 피신고인에게 반항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학생들끼리 조심을 많이 했다.' 고 진술하였다.

또한 '□□□ 교수님은 지도교수로 선택하면 안 되는 시스템인줄 알았다' 고 하거나, '□□□ 교수님은 원래 지도학생을 받지 않는 줄 알았고, 지도교수로 신청할 수 없는 줄 알았다' 고 진술하는 등 학과 내 특정 교수가 학생 지도에서도 배제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피신고인은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생활과 행동을 통제하였다. 피신고인이 2014년에 학생들에게 단체로 발송한 이메일에는 '논리적 글쓰기의 문제 … 타학교 선생들은 학생 앞에서 불같이 화내면서 잘들 집어 던진다고 하더군요. 올면서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나도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야 논문지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 다들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나도 이제 집어 던지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으며, 학생들은 이 이메일을 받고 '교수님이 협박하나?'라는 생각과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단체로 발송된 일시불상(2014~2016년 경)의 이메일에는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 두 명에게 연락을 하여 … OT를 해 주도록 하세요. … 처음부터 기강을 똑바로 잡아야겠죠?' 라고 하였으며, 2015년 이메일에는 '사제지간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 대학원생들 간에도 서로 위계질서는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위계를 중시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신고인은 한 학생이 전공생들끼리 회식하는 날 학과 언니에게 반말을 하자 그 학생에게 따로 연락하여

‘예의가 없다’고 나무라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피신고인은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에게 ‘한국 예의법절을 잘 익히지 못했다. 선생님한테 예의를 갖춰서 조심해서 말해야 한다’, ‘말이 너무 빠르다’고 나무라는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너희 부모님은 쿨 할지 모르지만 한국문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으니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르쳐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또 피신고인은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학생이 잠시 일어나서 피신고인에게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는데, 몇 시간 후에 ‘선생님을 만났는데 일어서서 인사하지 않았다, 예의가 없다, 이 상황을 전공생들에게 알려라’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말하는 방식, 인사하는 방식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다시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전공생들끼리 서로 상황을 공유하고 피신고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했다.

피신고인은 2016년 학생들에게 “◇◇◇ 선생이 회식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들 봤죠? 지도교수인 ◆◆◆ 선생 옆에 그림자처럼 불어서 서빙하고 얘기 나누는 모습 말이에요. 우리 어학 대학원생들도 선배들한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많이 보고 배우기 바랍니다.” “지도 교수에 대한 예의를 잘 좀 신경 쓰도록 해주세요.”라고 단체 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이메일을 받은 학생들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술집 여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충격을 받거나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회식 자리에서의 예의 관련해서 피신고인은 한 학생에게 “술을 따를 때 무릎을 끊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다”고 하였고, 학생이 “왜 무릎을 끊어야 하는 것 이냐?”고 묻자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국 예절을 모른다”고 혼이 나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나) 피신고인의 주장

피신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첫째, 술자리를 강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신고인은 학과 전체 행사에서 술자리에만 주로 참석하며, 술을 늦게까지 마시는 성향이 아니고, 학생들을 억지로 불잡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학생들이 술자리를 일찍 떠난 것을 다그치는 이메일과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학생들은 다 남아 있는 상황에 본인의 지도 학생들만 말없이 사라진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고, 행사를 주최한 입장에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등산을 같이 갈 것을 강요했다는 진술에 대해서, 피신고인은 등산이 취미인데 마침 모 학생이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길래 같이 가자고 말을 건넸을 뿐이고, 단 둘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 학생의 남자친구와 같이 가자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단 둘이 등산을 간 적은 없고, 집요하게 요청하지 않았으며, 실제 등산을 갔을 때는 지도하는 학생들이 호응해서 다녀왔을 뿐 강요하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둘째, 학생들에게 감사인사, 성의표시를 하라고 요구 했다는 점에 대해서, 피신고인은 논문 지도를 받으려 갈 때 음료라도 들고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은 있고, 지금은 청탁금지법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예의 차원에서 해 준 이야기였다고 진술한다.

셋째, 같은 학과의 특정 교수를 학생들 앞에서 비난·비하하고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하여,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속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아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었지,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논문 작성할 때 예문 인용을 정확히 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지도교수로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며, 실제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지도교수로 선택해서 학위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한다. 피신고인은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다른 수업을 권유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이메일을 보낸 취지는 타 학과 수업까지 다양하게 들으라는 조언이었을 뿐, 특정 교수의 수업을 수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넷째, 학생들의 생활태도를 지적하고 질책하였다는 피해 진술에 대해서, 피신고인은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말은 직접 한 적은 없고, 이메일에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취지로 적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다. 피신고인은 평소 장유유서와 같은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선후배나 사제지간에 존대법이나 인사법 등 예의를 지키길 바라는 마음과 인성교육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피신고인은 외국 생활을 한 학생에게 ‘한국 예의를 모른다.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야단을 친 적은 없으며, ‘술을 따를 때 무릎을 끓고 따라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 다만 ‘선생님 옆에서 그림자처럼 서빙하는 걸 보고 배워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그 표현이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발언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좀 더 잘 소통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한다.

다) 사실인정

당사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피신고인의 진술, 이메일 등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술자리와 등산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2015년 5월 15일 스승의날 행사로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관악산으로 등산을 다녀온 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피신고인의 지도학생들이 피신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술자리를 이탈하자, 피신고인은 다음날 새벽 2시에 스페인어로 ‘동양적 예의를 중시하는 교수로서, 학생들이 말없이 술자리를 떠난 것이 유감스럽다. 감사하다는 표시 없이 가버린 것은 행사를 제안한 입장에서 섭섭하다’는 내용의 단체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따르면 일시불상의 어느 날 피신고인은 학생들이 술자리에서 일찍 일어났다는 이유로 ‘Ingrata(배은망덕한)’라는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피신고인이 특정 여학생에게 단 둘이 등산을 가자고 종용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여학생은 피신고인이 등산을 같이 가자고 한 발언 내용, 발언 당시 상황,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여학생과 제3자가 주고 받은 2016년 카카오톡 내역에 ‘피신고인이 반복적으로 등산을 가자고 요구해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당시 해당 여학생이 피신고인의 요청에 곤란해했던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도 있다. 피신고인은 단 둘이 등산 갈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나, 진술에서 해당 여학생에게 등산을 가자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여학생의 남자친구와 같이 가자는 이야기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신고인이 보낸 이메일에 ‘청계산에 가자’는 내용이 있으며, 이 역시 해당 여학생의 진술과 일치한다. 일치하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미루어 보아 피신고인은 특정 여학생에게 단 둘이, 또는 여학생의 남자친구와 함께 등산을 가자고 말 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감사인사와 성의표시를 요구했다는 부분은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 있거나 일치하는 내용의 참고인 진술도 다수 있는바 사실로 인정된다.

셋째, 학과의 모 교수를 비난·비하하였으며, 인사를 하지 말고 수업을 듣지 말도록 강요한 부분 역시,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다수의 참고인 진술이 이메일 발송 전후 상황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사실로 인정된다.

넷째, 피신고인이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질책, 지적하여 통제, 압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 논문 지도를 할 때 피신고인 본인이 화를 덜 내도록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논문을 짊어 던지겠다는 내용, 수업 중 선생님에게 말할 때는 예의를 지키고 말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한 내용, 대학원 신입생들 기강과 위계질서를 잡으라고 하는 내용, 술자리에서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고 선배한테 처신하는 법을 보고 배우라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연장자에게 반말 하지 말라고 한 부분, 선생님에게는 일어서서 인사하라고 한 부분은 피신고인 역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진술이 일치한다.

다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야 한다’, ‘한국 예절을 모르고,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목격 진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발언을 피해자 진술 그대로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미루어 보아 선생님을

윗사람으로 여기고 술자리에서 충분히 대접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신고인이 평소에 ‘동양의 예의’,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언급해 온 사실이 이메일 자료와 여러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바, 한국의 예의를 잘 모른다는 취지의 언행 역시 실제로 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위와 같은 취지의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라) 권리침해 판단

위 인정된 사실들이 부당한 절차과 요구로서 학생들의 행동과 생활을 억압하고 통제하여 인권 침해에 이르렀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사제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가르치려는 의도였으며, 이메일로 전달되면서 본래 의도보다 강하게 전달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신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수자로서 지도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알려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가르침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방법이나 내용이 과도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억압하고 생활태도를 통제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 인권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인정사실 중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감사인사, 성의표시를 요구한 점과 학과의 다른 교수를 비난·비하하고 배제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낸 부분을 살핀다.

논문지도에 대해 감사인사와 성의표시를 요구한 것은 사제기간의 예의나 교수자의 가르침의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지도학생에게 논문 지도를 하는 것은 교수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학생들이 교수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을 물질로 표시해야 할 이유는 없다. 비록 피신고인의 해당 언행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이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없다.

타 교수를 비난하고 배제하도록 한 언행은 피신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게 된 맥락을 최대한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신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을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토로하고, 노골적인 혐오의 표현을 담아 다른 교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인사하지 말라’, ‘다른 수업을 들도록 안내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학생들은 피신고인의 눈치가 보여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대화를 하다가도 신경을 써야 했고, 복도에서 해당 교수를 마주쳐도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고 토로하였는데, 피신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언행은 학생들의 행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었다.

이는 해당 교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학문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고립시켜 인격을 침해하고 교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수업을 선택할 권리, 자유롭게 다른 교수와 대화하고 인사하고 관계를 맺을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였다.

이러한 침해는 학생들이 다른 교수의 수업을 수강했다는 사실,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억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사실이 사라지거나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등산, 술자리 강요 부분을 살펴본다.

피신고인이 술자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학생들의 귀가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최소 2회 이상 단체 메일을 보내 ‘예의가 없다’, ‘배은망덕하다’ 등의 언행을 하였다.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학생들은 술자리에서 한꺼번에 자리를 뜨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집에 가거나, 술자리 참석 여부를 자유롭게 정하기 어려웠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또한 등

산을 같이 가자는 말 역시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가벼운 제안이었을 수 있으나, 요청을 받는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끼고 에둘러 거절하고 평계를 만들 때마다 곤란하고 괴로운 감정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결국엔 거절하지 못하고 다 같이 등산을 가게 되었다.

피신고인이 학생들에게 예의 없다는 이메일을 보내고 등산을 가자고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인권침해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나, 학생들은 피신고인의 말을 거역하기 어려운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약자이며, 실제 그 관계의 특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부담감과 괴로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면 피신고인의 이 부분 언행만으로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끝으로 학생들의 태도를 질책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언행을 살핀다.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말이 빠르다, 연장자에게 반말하지 말아라, 일어서서 인사해라 등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이메일과 문자를 몇 차례 보낸 사실이 있다. 이는 선생님으로서 예의범절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함이 있다. 말이 빠른 것은 예의의 문제라 보기 어렵고, 성인인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반말이나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제는 친밀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교수의 질책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 또한 피신고인에게 일어서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굳이 몇 시간 후 문자를 보내 나무란 것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질책을 받아야 했던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단체메일을 보내 특정한 대학원생을 지칭하며 ‘회식자리에서 선생님에게 그림자처럼 서빙하는 모습, 선배들한테 처신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라 표현하고 있다. 이 이메일을 받고 학생들은 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꼈고, 학생을

술집 여자처럼 취급한 것 같아 충격 받았다고 한다. 여학생이 절대 다수인 학과에서 특정 여학생의 행동을 지칭해서 술자리 서빙 태도를 강요하는 것은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동시에 예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한 것은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질서·상하관계를 강요하며,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행동을 제약, 통제하는 언행에 해당한다.

피신고인의 모든 언행들은 피신고인도 주지하고 있듯 교수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피신고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언행을 '예의 없는 행위'라 규정하고 학생들을 질책하였는데, 이는 피신고인이 학생들보다 학내 권력에서 우위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대로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요구와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취약한 위치에 있다. 특히 피신고인의 요구, 지시, 질책이 정당한 가르침의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행동을 제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이나 반론도 제기할 수 없고, 요구와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는 사실로 인한 모욕감과 굴욕감도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욕감과 굴욕감을 지속적으로 받는 관계가 학문적으로 누구보다 밀접한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라는 사실, 침해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대학원생들이 일상생활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사실은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해하고 이는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를 침해하였고, 모욕감, 굴욕감을 주는 언동으로 인격을 훼손하였다.

2) 욕설·모욕적 발언

가) 당사자·참고인들의 피해사실 주장

피신고인은 2014-2016년 사이 일시불상의 회식이 있었던 다음날 새벽 학생들에게 문자(또는 이메일)을 보내 ‘회식 자리에서 왜 먼저 갔느냐’면서 스페인어로 ‘Ingrata’라고 발언하였다.

원어민이나 스페인어 전공생에게 ‘Ingrata’는 표현은 심한 욕과 같으며, 욕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분이 나쁜 말이라고 진술한다.

나) 피신고인의 주장

피신고인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학생들이 먼저 집에 가니까 기분이 좋지 않아서 했던 말이며, 스페인어로 욕은 따로 있고, ‘Ingrata’는 ‘예의 없다’는 뜻에서 쓴 것일 뿐이라고 한다.

다) 사실인정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신고인이 학생들 다수에게 ‘Ingrata’라는 스페인어를 문자(또는 이메일로)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Ingrata’는 직역하면 ‘배은망덕한’이다.

라) 권리침해 판단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다양해서 지역마다 단어를 이해하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신고인의 언행은 한국어로 직역해도 ‘배운망덕한’에 해당한다.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스페인어를 전공으로 석사·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배운망덕하다’는 의미 전달은 분명히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상스러운 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하지 않더라도, ‘배운망덕한’이라는 말은 지도교수가 학생들이 술 자리에서 일찍 일어섰다는 이유만으로 하기에는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한다.

3) 과도한 사생활 간섭

가) 당사자·참고인들의 피해사실 주장

피신고인은 최소 2명 이상의 학생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라’고 했으며, ‘괜찮은 사람인지 판단해 주겠다. 같이 술을 마시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 했으며, 실제 소개를 시키거나 자리를 마련해 술을 같이 마신 적이 있다고 한다. 그 중 한 학생(A)이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알고서는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반복적으로 질문했으며, A와 스페인 회화에 참석했다가 늦은 밤 단둘이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는 도중 ‘남자친구와

단 둘이 1박2일로 여행을 가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신고인의 주장

피신고인은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으라'고 말 한 기억은 잘 나지 않으며, 했다 하더라도 농담으로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학생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자고 한 적은 있고, 실제로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으며, 헤어진 이유를 물어본 것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라고 진술한다. 여행을 가지 말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 발언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학생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부모님 역할을 대신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다) 사실인정

다수의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신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신고인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킨 학생은 2명에 불과하며, 한 명은 결혼 전 학교로 찾아와 인사를 드린 것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친구와 술자리까지 가진 경우는 1명뿐이다. 다른 학생들의 경우 결혼식장이나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를 한 적은 있어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 인사하거나 밥이나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한다. 이런 정황에서 '허락을 받아라'는 말을 들었다는 학생 2명이 실제로 남자친구 인사를 시키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피신고인이 2명의 학생에게 남자친구를 지도교수에게 인사·소개시키도록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고인과 당사자들의 진술 중 일치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학생에게 남자친

구와 1박2일 여행을 가지 말라는 부분 역시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자는 발언이 있었고, 실제로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학생에게 여러 차례 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물었던 것으로 사실로 인정된다.

라) 권리침해 판단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라’는 피신고인의 언행은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 친밀감이 충분하고 등등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피신고인의 주장대로 농담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소 사제간 위계질서를 중요시 하는 피신고인에게 지도학생이 사생활을 털어놓고 농담을 주고받기는 어렵다. 게다가 학생들이 실제로 피신고인의 말을 듣고 남자친구를 인사시키거나 술자리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아 이 언행을 단순히 농담이라 해석할 수 없으며, 사적 영역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고인이 여학생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반복해서 물은 것은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된다.

‘남자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적 있느냐, 가면 안 된다, 부모님이 실망 할 것이다’는 피신고인의 발언은 학생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 것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다. 부모님이 실망할 것이라는 발언의 맥락 상 여행 이야기에는 성적 함의가 있으며, 외국, 호텔 바,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있었는바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전후사정이 존재한다. 피신고인의 이 언행은 학생의 사적 영역을 침해한 것이며, 동시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4) 부당한 업무 지시

가) 당사자·참고인들의 피해사실 주장

피신고인의 GSII(강의·연구 지원 조교)를 맡은 학생은 해당 학기 동안 피신고인의 연구실을 청소해야 했으며, 피신고인이 맡은 강의 시작 전 피신고인의 텁블러를 받아 설거지 한 후 따뜻한 차를 담아 강의실에 가져다 줘야 하는 등 설거지와 차 심부름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신고인은 원어민인 학생들에게 번역을 가끔 지시했는데, 특히 한 학생이 2016년 6월, 1학기 석사학위 논문 심사 도중에 피신고인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다. 피신고인은 번역 후 영어 원어민에게 한 번 더 절수를 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번역의 대가로 소액의 ‘교정비’만 지급하였다.

나) 피신고인의 주장

피신고인은 GSII에게 특별히 시킬 일이 없어서 연구실 청소를 시켰으나 강요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녹차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고, 학생의 호의적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거절하지 않았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번역의 경우, 학생 의도를 먼저 물어봤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맡기게 된 것 이지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 번역기를 돌려 먼저 영어 번전을 만들고, 그것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보라고 하였고, 인문대학 국제화지원센터 외국어 논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9페이지 총 34만 2천원의

교정비가 지급되었다고 한다.

다) 사실인정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부터 최근까지 피신고인의 연구실 청소는 최소 2014년 이후 GSI를 한 학생들이 모두 해 왔던 일로 확인된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쓰레기를 치우고 방을 정리하였다고 한다.

텀블러 설거지와 차 심부름의 경우, 몇 년 전까지는 피신고인이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물 한잔 떠달라’고 가끔 부탁하는 정도였고, 이런 모습을 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차를 가져다주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는 GSI를 맡은 학생들에게 피신고인이 직접 청소와 차 심부름이 ‘GSI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피신고인의 수업 시작 전 텀블러를 받으러 가고, 텀블러를 셋어서 따뜻한 차를 담아 강의실에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한다. 텀블러는 지난 강의 때 사용한 그대로 방 치되어 있고, 피신고인이 미리 닦아 놓지 않기 때문에 새로 차를 담기 위해서는 당연히 설거지를 해야 했다고 한다.

피신고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하나, 차 심부름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여러 진술에서 일치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회용이나 공용 컵도 아닌, 피신고인 소유의 텀블러를 이용해 차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차 심부름에 설거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역시 논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차 심부름과 설거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번역의 경우 이메일 자료를 통해 학생이 석사논문 심사 중이던 시기에 피신고인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인문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

해 교정비가 지급된 점 역시 사실로 확인된다.

라) 권리침해 판단

「서울대학교 강의연구지원장학금 관리지침」 제1조에 따르면 강의·연구 지원 조교는 ‘대학원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5조에 따르면 이들에게 배정된 임무는 ‘교수의 연구 보조, 강의 보조, 학생의 수강 지도 및 과제물 처리, 실험실 관리, 학사행정보조 등’이다.

교수 연구실 청소, 텁블러 설거지, 차 심부름은 교수의 개인 생활 편의를 위한 업무이지, 연구나 강의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장학제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위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영문 번역을 하였던 학생은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이다.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료는 장당 600자를 기준으로 3만 원 이상이며, 논문의 경우 난이도가 높아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감수를 거칠 경우에도 추가 요금이 소요된다. 피신고인이 번역가에게 논문 번역을 맡겼다면 번역과 감수에 장당 6~9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¹⁾

번역을 한 학생이 번역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심문 고려하더라도, 전문적인 학술지에 투고하는 교수의 논문을 번역하고서 교정비를 지급 받는 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해당 학생은 번역을 부탁 받았던 2016년 6월~7월 당시 본인의 석사논문 심사와 수정을 해야 할 시기

1) 번역협동조합 번역료 안내문 참조. <https://www.transcoop.net/transl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번역 요율표 참조. <http://www.hufscit.com/>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 심사를 받던 학생 입장에서는 지도교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신고인의 번역 지시와 과소한 번역료 지급은 학생의 학습·연구 환경을 저해한 것은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당한 지시라 판단된다.

5) A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가) 당사자·참고인들의 피해사실 주장

2015년 피신고인과 지도학생 2명이 다른 학과 사람들과 함께 브리비아에 프로젝트를 하러 갔을 때, 피신고인이 학생 중 1명(A)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와 팔뚝을 잡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 브리비아에서 버스로 장거리 이동 중에 A는 잠이 들었는데, 느낌이 이상해 깨 보니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신고인이 손가락 5개를 세워서 정수리 부분을 문지르고 있었다고 한다. 피신고인의 행동에 놀란 A는 잠에서 깨지 않은 채 하며 버스 때문에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 피신고인이 만지고 있던 머리를 빼냈다고 한다. 이후 피신고인이 가끔씩 어깨나 팔 뒤쪽을 잡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2017년 여름 A학생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석사논문을 수정하여 스페인 학회에 공동저자로 발표를 하려 가자’는 지시를 받고, 피신고인과 함께 스페인 학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학회는 총 3일 동안 진행되었고, A의 발표는 첫날 오전(점심 무렵)에 배정되어 있었다. A는 학회 시작 이틀 전 학회 개최 도시에 미리 도착해

있었고, 피신고인은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하고 하루 전 학회 장소에 도착했다. 학회 첫날 A가 발표를 마치자 피신고인은 ‘수고했으니 술을 사주겠다’, ‘느끼한 걸 너무 오래 먹었더니 라면을 먹고 싶다. 같이 먹으려고 컵라면 두 개 가져왔으니 내 방에서 같이 먹자’고 제안하였다. A는 피신고인의 호텔방에 단 둘이 있고 싶지 않아서 호텔 로비나 식당 등에서 먹을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신고인이 듣지 않았고, 오히려 A의 방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신고인 방에서 라면을 먹는 것으로 승낙하였다. 5~6시 사이 쯤 A는 피신고인의 방으로 갔고, 피신고인이 라면과 맥주를 주었으며, 피신고인이 맥주를 한 캔 더 내어주고, ‘맥주를 마셨으니 더 센 술을 마셔야 한다’, ‘한 잔 더 하자’고 강요했다고 한다. A는 피곤하고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불편해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방에 계속 있거나 멀리 있는 술집까지 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술집에 가서 한 잔만 더 하자’고 제안, 피신고인과 함께 이동하였다. 이후에도 피신고인이 ‘한 잔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다음은 네가 사라’고 해서 A는 거절할 수가 없었고, 호텔 로비에 있는 바(BAR)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호텔 로비에 있는 바에서 피신고인은 A에게 A의 전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A는 스페인 학회 참석 전 원쪽 무릎 위부터 허벅지 위쪽 안까지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학회 발표 당시 화상이 심한 무릎 위 허벅지 아래 부분에는 붕대를 감고, 허벅지 위쪽은 흉이 심하지 않아 연고를 바른 상태였다고 한다. 당일 A는 무릎 윗선까지 오는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호텔 바에서 A와 피신고인이 나란히 앉게 되자, 피신고인이 A에게 치료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으며 흉터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가 ‘흉하다, 다 나았다’는 식으로 대답했으나 피신고인이 “봐봐” 하면서 치마를 밀어 올렸고, 허벅지 안쪽에 있는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잘 안 보이는데?”, “그렇게 심하지 않

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가 피곤하고 힘들어서 들어가고 싶다고 하자 피신고인은 ‘산책을 하자’고 했고, 밖으로 나와 호텔 주변을 한 바퀴 걷게 되었다고 한다. 근처를 걸던 도중 피신고인이 갑자기 A에게 대구 사투리로 “팔짱 껴라”라고 말했고, A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척 “네?”라고 하자 다시 “팔짱 껴라”라고 말했고, A가 다른 말을 하며 못 들은 척 하자 피신고인이 A의 팔을 잡아 팔짱을 끼웠다고 한다. A는 다른 곳을 가리키는 척 하면서 팔짱 낀 손을 풀고, 호텔에 도착하자 곧바로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갔다고 전술한다.

이후 A는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친한 언니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음날 A는 혼자 학회에 갔고, 피신고인을 피해서 다니다가 같이 가야하는 만찬 행사가 있어서 함께 참석했다고 한다. A는 피신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과 만찬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피신고인과 호텔까지 20분 정도 같이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을 불편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자리에 앉아 있던 외국 학생이 A가 불편해 하는 낌새를 눈치 채고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지도교수가 왜 따라 온 거야?”, “우리는 따라 오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상해서 물어봤어”라며 말을 걸어 왔다고 한다. 피신고인이 A에게 호텔로 돌아가자고 일어섰는데 A가 망설이자, 옆자리 외국 학생이 “도움 필요해?”라고 물어봤고, A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때 피신고인이 A에게 “가자”고 말하자 외국 학생이 “A는 우리랑 한 잔 더 하기로 했다”고 말해 주었고, A는 그 학생과 10-15분 정도 같이 앉아 있다가 혼자 호텔로 돌아왔다고 한다.

나) 피신고인의 주장

피신고인은 볼리비아에서 A학생의 머리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장시간 이

동으로 힘들 것 같아 피로를 풀라는 의미에서 지압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하지만 자고 있는 학생에게 한 것은 아니고, 불편해 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 그만 두었고, 그런 이유로 옆자리에 있던 학생에게는 지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신고인은 스페인에서 A의 화상 흉터를 보기 위해 치마를 올린 적이 없으며, A가 치마를 올려서 보여주었고, 꼬고 있던 다리를 풀어서 붕대가 감겨 있는 게 보였으며, A가 다 나았다고 말하길래 영겁결에 붕대를 손가락으로 눌러 보았다고 진술한다. 화상 흉터를 궁금해 했던 이유는 A가 다니던 화상전문병원 옆에서 피신고인의 부인이 약국을 하고 있고, 약을 가져다주는 등 도움을 주기도 했기 때문에 다 나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고 한다.

호텔 근처를 산책하던 도중 팔짱을 낀 것은, A가 이전에 단체사진을 찍을 때 다른 교수님들과 팔짱을 끼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고, 친근한 행동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짱 껴도 된다’ 정도로 이야기 하고, 잠깐 끼었다가 풀었다고 진술한다.

피신고인은 일련의 행동들에 어떤 성적 의도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또한 A가 술자리에서 들어가고 싶다거나 술을 거절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불편해 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 사실인정

A학생과 피신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참고인들의 진술, 제출 된 카카오톡 대화 기록과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볼리비아에서 버스로 이동 중 피신고인이 A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손

가락으로 만진 것이 인정된다.

2017년 스페인에서 피신고인이 A에게 호텔 방으로 오게 해 라면과 맥주를 같이 먹고,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으며, 호텔 바에서 3차 술자리를 하던 도중 A에게 화상 흉터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A의 왼쪽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A는 피신고인이 붕대보다 윗부분인 맨 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피신고인은 붕대가 감겨 있는 부분을 만졌다고 주장하여 두 사람의 진술이 배치된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진술이나 기억에 조금씩 오류나 왜곡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화상이 있는 부위인 왼쪽 다리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는 사실에서 일치하고 있고, 이 부분 사실 인정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후 호텔 근처를 산책하고 돌아가던 중 A에게 팔짱을 끼라고 하거나 팔짱을 끼운 부분에 대해서도, 피신고인이 A에게 ‘팔짱을 끼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실제로 팔짱을 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권리침해 판단

볼리비아에서 피신고인이 A의 정수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만진 것은 A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 성희롱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불시에 여성의 머리 정수리 부분에 손을 얹어 손가락을 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는 행위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보통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충분히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다.

스페인에서 피신고인이 A의 왼쪽 다리 허벅지에 있는 화상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진 것은 A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신체접촉으로, A에게 성적 수치심,

모욕감,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이다. 또한 A에게 팔짱을 끼라고 지시하고 실제로 팔짱을 끼거나 끼게 한 행위 역시 동일하다.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한다.

6) 기타

이 사건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참고인들은 피신고인으로부터 입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학과 내에서 진술을 방해하거나,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차별적 문화와 위계질서 등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하였다. 학생들은 이 사건 결정문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장기간, 다수의 교수로부터, 다양한 억압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방대하게 털어놓았다. 이 부분은 피신고인의 단독 행위라 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학과 분위기를 이해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 판단되어 ‘기타’ 항목으로 피해사실 주장은 별도로 기재한다.

가) 당사자·참고인들의 피해사실 주장

첫째, 피신고인은 학생들에게 논문 투고와 학회 참석 등 성과를 강요하였고, 지도교수로서 논문 작성에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게 하거나, 학생 논문과 관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의 논문을 인용하게 하였다

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이 번역과 통역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어가 능통한 학생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과제를 부과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을 착취하는 등 학술적인 억압과 착취를 경험·목격했다고 진술한다.

둘째, 이 사건 조사 개시 이후 피신고인 외의 다른 교수, 강사, 학생들이 신고인과 조력자가 누구인지 찾으려는 행동을 여러 차례 하였고, 사건에 대해 누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떠보면서 관련자를 추측하려고 하였다. 또한 학과 교수 중 일부가 이 사건이 ‘회식 자리 성추행’이라는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거나, 사건에 대해 ‘별 거 아닌 일’, ‘한국에서 회식에 가면 여자들은 대부분 겪는 일’, ‘신고자가 예민한 것’, ‘걔가 평소에 옷을 짧게 입고 다녔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등 사건을 왜곡, 축소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인권센터 조사에 협조한 학생들은 신원이 밝혀질 경우 학과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압박감에 시달렸고,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학과에서 어영부영 무마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조사 초중반에는 이러한 학과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이 선뜻 인권센터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하였다.

셋째, 서어서문학과는 ‘술문화’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학과 회식이 찾았고, ‘대학원에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표현을 모 교수가 할 정도로 술자리에 잘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진술한다. 때문에 늦은 저녁에 술자리에 불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밤새 과제를 하거나 논문 작성을 하는 경우가 찾았고, 술자리를 만든 교수들은 학생들이 과제나 시험 등을 이유로 술자리에 불참하는 것을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학원 입학 전 합격자가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모 교수가 ‘술을 잘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해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과 회식문화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건강상 문제나 종교적 이유로 음주를 하

지 못하는 사람, 둘째야 할 가족이 있어서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회식 자리에서 논의되는 내용에서 배제되었고, 반대로 술자리에 잘 어울렸던 사람은 술을 잘 마신다는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붙잡아두거나 가고 싶지 않은 날에도 호출되어 나가야 했던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넷째, 학생들은 회식자리는 물론 학과 운영에 있어서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하다고 진술한다. 여학생이 절대 다수인 학과에서 공공연하게 교수들이 본교 출신 남학생을 교수로 이끌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술자리에서 타교 출신 여학생에게 ‘너는 어차피 교수 시킬 생각도 없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최근에는 개설되는 과목에 비해 강사 수가 초과되자 학과 교수들이 ‘남편이 돈을 버는 여자 강사를 제외하자’고 의견을 내고 그대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술자리에서 교수들이 여학생들을 지적하며 ‘누구는 공부할 상이고, 누구는 결혼해서 그만둘 상이고’ 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했고, ‘여자가 스물다섯 살 지나면 꺾어지는데 너희는 지금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거나, 여자와 남자를 암탉과 수탉에 비유해 이야기 하며 일부다처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에 반대하는 대답을 한 학생에게 ‘너 페미니스트냐’고 반문하였고,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살을 빼라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반발하는 말을 하면 “전인교육이다”고 대꾸했다고 한다.

나) 소결

피신고인의 연구윤리 문제는 인권센터의 직접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진실성위원회에 2018. 10. 31. 이첩하였다. 다만 인권센터는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과 부당함을 느꼈는지 여부를 종합적인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

학과 내에서 이 사건 관련한 2차 가해가 발생한 정황, 학과의 회식 문화, 성차
별적 언행의 부분들은 참고인들 다수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이라고 판단되며, 이 부분은 사건을 종합적으
로 해석하고, 학과와 단과대학에 필요한 권고사항의 판단 근거로 삼는다.

나. 처분에 대한 판단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바 다음과 같이 피신고인에게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 피신고인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 기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질책, 요구, 생활태도를 지적하고 행동을 제약하는 여러 발언을 수차례 한 사실이 있다.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였고, 학생들의 사생활에 간섭하였다. 또한 강의 연구조교에게 교수 연구실 청소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으며, 번역을 시키고 교정비를 지급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결과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언행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을 침해하고,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어 인격을 훼손하였으며, 학습과 연구를 방해한 것으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5호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신고인은 A의 동의 없이 머리를 만졌고, 화상 흉터가 있는 허벅지를 만졌으며, 팔짱을 끈 사실이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동이 A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 모욕감, 굴욕감, 혐오감을 주는 성적 언동으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조 제2호의 성희롱 및 제3호의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수인 피신고인과 대학원생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학내 위계질서 속에서 거절의 의사표시나 불편한 내색도 제대로 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장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실에 주목하였다. 또한 피신고인의 행위 중 인권침해로 인정하기에 경미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일상 속에서 엄격한 상하관계를 확인하는 행동을 소소하지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고착시켰다고 판단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명백히 부당한 요구나 지시가 있더라도 순응하게 되었고, 학과 내 특정 교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집단적으로 배제하는 일, 과도한 술시중을 요구한 일 등등이 일어나도 침묵하고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들은 피신고인이 나무라거나 질책할 때마다 사과하고 더 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고, 그 이후부터는 피신고인의 질책을 듣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거나, 불합리한 위계질서와 문화를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대물림해야 했다.

수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은 처음에는 피신고인의 언행에 분노하다가도 점차 순응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부당함에 대응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처지에 무력감과 글욕감을 쌓아갔다. 이런 문제로 인해 사건 조사 초기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을 두려워하고 꺼려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무렵에 이르러서는 총 17명의 참고인 진술이 제출되었으며, 대다수의 진술서가 익명으로, 자발적으로 제출되었다.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한 행위의 잘못의 정도와 사건 전후 맥락, 학생들의 피해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피신고인에게 최소한 정직 3월 이상의 증정계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직 3월의 수치는 현행 규정상 가능한 최대치의 정직이라는 의미이며, 심의 위원회 결정의 진의는 징계 결정 시점에서 부과할 수 있는 해임 전 단계의 가장

중한 징계를 의미함을 밝힌다. 또한 현재 연구진실성위원회 등 기타 기관에 피신고인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학내외 기관에서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보고된다면 징계 양정에 이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2)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언행을 과도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피신고인은 학생들의 많은 행동들이 자발적이었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고, 오히려 학생의 평소 태도나 행동이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인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상하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태도를 보였다.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생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언행을 해 왔고, 교육공동체 내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일에 학생들을 가담하게 하는 등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로서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음을 주의 깊게 보았다. 또한 이러한 언행을 지도학생들에게 일상적으로 해 왔다는 점,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점, 피신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학생들의 취약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에 깊이 공감하지 못한 사실을 고려하였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무엇보다도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자각하고 반성하며, 학생들을 동료이자 후배로서 존중하고,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반성과 교육의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신고인은 재발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3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교육의 방식은 일대일 상담과 교육이어야 한다. 이 교육을 3개월 이내에 이수한 후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과문과 소감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신고인이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와 관계 형성을 위하여 인권센터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15시간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 확인증과

소감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서어서문학과라는 공동체 내에서 벌어졌고, 당사자들이 교수와 제자라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추가적인 갈등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학과 내 다수의 학생들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였고, 진술을 한 17명 전원이 인권센터에 신원 보호를 요청한 사실도 고려하여, 피신고인에게 피해자 보호 조치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피신고인은 인권센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신고인 또는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자, 인권센터에 진술하거나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접촉·면담·대화 등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해서는 아니 되며, 직·간접적으로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피신고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위배하거나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불이익 또는 보복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였을 때는 인권센터는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한다.

4) 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이 겪은 인권침해 행위가 단지 피신고인 개인의 행위에만 국한하지 않다고 보며, 피신고인의 문제 언행 역시 학과가 만들어온 문화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한다. 피신고인의 잘못이 곧바로 신고 되거나 교정되지 못했던 이유도 폐쇄적인 공동체 분위기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진술을 꺼려했던 이유에는 학과 전체에서 낙인찍히고 배제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실제로 인권센터 조사 개시 이후 학과 내에서 신고인이나 조력자를 찾으려는 행위가 있었고, 신고인으로 추정되는 학생을 비난하거나 사건을 축소 해석 하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신고인이

특정 교수를 모욕하고 배제하는 일은 수 년 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학과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학과에도 방관과 동조의 책임이 있다.

학과에서 일부를 배제하고, 소수의 인원이 학과의 많은 일들을 결정할 경우 결정 과정이나 정보 전달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하게 될 위협이 크고 학과 운영, 행정, 회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많은 인권침해 사안들은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피신고인 개인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과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개선해야만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서어서문학과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고, 학과가 유사한 사건 방지를 위해 내부 체계를 정비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과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고 학생과 교수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서어서문학과는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전 구성원에게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각 지위에 따라 별도 교육을 해야 한다. 학과 내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하며, 회식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전공 선택과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서 자유로운 결정과 변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행정과 회계를 투명하게 하며, 장학금이나 논문 게재와 같이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어서문학과는 특정 교수를 배제하는 일에 학과 교수들이 동조하거나 방관한 사실에 책임을 인정하고, 교수회의에서 학과장이 공식적으로 이를 사과하고 재

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끝으로 서어서문학과는 이 사건 조사에 협조한 모든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임을 진다. 교수·강사 등은 이 사건에 진술했거나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력, 불편한 환경 조성, 배제와 따돌림 등 어떠한 방식으로도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며, 학과장은 이에 관리감독 책임을 진다. 이를 어겼을 경우 인권센터는 행위자에 대해 이를 사유로 별도의 징계를 요청한다.

5) 심의위원회는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의 대학원생 인권침해 문제가 서어서문학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인문대학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실태 파악과 예방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인문대학 소속 학과에서 발생한 문제를 단과대학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인문대학은 서어서문학과에 대한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 관리·감독하고 협조해야 하며, 단과대학 내에 대학원생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학원생들이 피해를 입은 초기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인문대학은 교수, 대학원생, 학부생 등 전 구성원에게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각 지위에 따라 별도 교육을 해야 한다. 또한 인문대학 내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한 후 성과를 인문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공표해야 한다.

3. 결론

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21.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